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년 6월
30일)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2013)에 따른 중재에
있어서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미국)(ELLIOTT ASSOCIATES, L.P.
(U.S.A))

를 청구인으로

v.

대한민국
을 피청구국으로 하는

PCA Case No. 2018-51

중재판정 정정 및 해석 신청

2023년 7월 18일

Arnold & Porter

PETER & KIM
ATTORNEYS AT LAW

목차

| | | |
|------|------------------------------|----|
| I. | 서론 및 주장 요지 | 1 |
| II. | 정정 신청 | 2 |
| | A. 적용되는 법리 | 2 |
| | B. 정정이 요구되는 계산상 오류의 특징 | 3 |
| | C. 정정 신청 사항 | 5 |
| III. | 해석 신청 | 8 |
| | A. 적용되는 법리 | 8 |
| | B. 해석이 요구되는 모호함의 특징 | 9 |
| | C. 해석 신청 사항 | 10 |
| IV. | 결론 및 신청 취지 | 10 |

I. 서론 및 주장 요지

1. 피청구국 대한민국은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2013) ("UNCITRAL 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상기 중재에서 2023년 6월 20일에 내려진 중재판정("중재판정")에 대하여 본 정정 및 해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정정.** 중재판정은 손해 계산상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정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계산 과정에 있어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전 금액을 사용할 의사임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22년 5월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로부터 한국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대상인 청구인 소유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 주식(Putback Shares)")에 관하여 수령한 "추가지급금(Top-Up Payment)" 금액에 대하여는 명백히 부지불식간에 세후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추가지급금에 대한 세후 금액을 청구인의 매수청구 주식 수로 나눔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추가지급금의 1주당 가액으로 "보인다" 고 실시한 금액을 (이 금액이 세후 금액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산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자신의 매수청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실제로 얻은 총 매매대금을 계산하면서 중재판정부는 (a)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전 금액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청구인이 매수청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얻은 당초 매매대금의 1주당 가액에 (b) 상술한 바와 같은 계산을 통하여 산정된 세후 금액을 뜻하지 않게 잘못 사용하여 계산한 동일 매수청구 주식에 대한 추가지급금의 1주당 가액을 합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하나의 등식에 혼용함으로써, 스스로 적용하고자 했던 "일관성"을 의도치 않게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청구인이 매수청구 주식의 매도로 얻은 실제 매매대금을 부정확하게 과소 평가하고, 그에 따라 해당 주식 매도로 인한 청구인의 손실액을 그 금액만큼 과대 평가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과대 평가된 손실은 중재판정부의 손해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결과 손해가 과대 평가되었습니다.

3. 이와 같은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매수청구 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손실은 중재판정부가 의도한대로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을 이용하여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비록 청구인이 위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위 금액은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세전 금액은

아래 II.C항에 설명한 것과 같이 청구인과 삼성물산 사이의 2016년 3월 15일자 주식매수가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합의서")¹에서 합의된 추가지급금 계산식 및 대법원 2022. 4. 14. 선고 판결에 따라 다른 소수주주들에게 지급된 주식 대금²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래 II.C항에 정정된 계산을 기재하였습니다.

4. **해석.** 중재판정 995(c)항에서 지급을 명한 판정 전 이자의 통화에 대한 해석도 요구됩니다. 비록 중재판정부가 961항에서 판정 전 이자에 적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고 하였으나, 중재판정의 주문(995(c)항)에서는 "위[995](b)항의 금액에 대하여" 판정 전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데, [995](b)항의 금액은 미 달러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³ 이에 대한민국은 아래 III.C항에서 중재판정부가 판정 전 이자를 대한민국 원화 또는 미 달러화 중 어떠한 통화로 계산할 것을 명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하여 해석을 신청합니다.

II. 정정 신청

A. 적용되는 법리

5. UNCITRAL 규칙 제3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당사자의 일방은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중재판정문의 계산상 오류, 문서기록이나 타자상의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오류나 누락한 사항을 정정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정정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정 신청의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정을 해야 한다.⁴

6. 중재판정 정정의 목적은 중재판정을 중재판정부가 의도한 결정에 합치시키기 위함입니다.⁵ “특정 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실수”는 UNCITRAL 규칙 제38조

¹ Ex. C-450, 합의서 제2.4조 “추가지급금”의 정의 참고.

² Ex. C-78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 마 5394(병합) 판결 참고.

³ 중재판정, ¶¶ 961, 995(b)-(c)항.

⁴ UNCITRAL 규칙, 제38조 제1항.

⁵ RLA-173, David Caron & Lee Caplan,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 COMMENTARY (2d. ed. 2013), Art. 38, p. 811.

제1항에 따라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계산상 오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⁶

7. 본 신청은 중재판정부가 손해액 계산에 있어서 세전 금액의 사용을 의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실수로 세후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정 제도가 다루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종류의 계산 실수입니다.

8.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입니다.⁷ 중재판정은 본 정정 신청일로부터 28일 전인 2023년 6월 20일에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은 신청 기한을 준수하였습니다.

B. 정정이 요구되는 계산상 오류의 특정

9. 중재판정에서 청구인의 매수청구 주식에 관한 총 손실은 (i)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적 시나리오에서 청구인이 보유한 매수청구 주식의 가치 (“가정적 시나리오 가치”)와 (ii) 청구인이 합의서에 따라 매수청구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얻은 매매대금 (“실제 시나리오 매매대금”)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⁸ 실제 시나리오 매매대금은 (a) 청구인이 합의서 제1.1조에 따라 매수청구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대금 (“매매대금”)과 (b) 청구인이 합의서 제2.4조에 따라 거래 종결 이후(post-closing) 수령한 추가지급금의 합으로 계산됩니다.⁹ 정리하면, 매수청구 주식과 관련된 청구인의 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중재판정부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매수청구 주식으로 인한 총 손실} = \text{가정적 시나리오 가치} - \text{실제 시나리오 매매대금}$$

혹은 더 구체적으로:

⁶ See, e.g., **RLA-174**, Luiz Olavo Baptista, *Correction and Clarification of Arbitral Awards*, in *ARBITRATION ADVOCACY IN CHANGING TIMES* (INTERNATIONAL COUNCIL FOR COMMERCIAL ARBITRATION CONGRESS SERIES NO. 15) 275, 280 (Albert Jan van den Berg ed., 2011) (정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는 문서기록 오류 뿐만 아니라 "특정 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오류"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오류"를 포함한다). See also **RLA-175**, Gary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d. ed. 2022), § 24.01 (중재판정의 손해 계산은 계산상 실수를 포함할 수 있고 손해 판정과 관련 있는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이 오기될 수도 있으며 ...).

⁷ UNCITRAL 규칙, 제38조 제1항 참고.

⁸ 중재판정, ¶¶ 929–936.

⁹ 중재판정, ¶ 936 참고.

매수청구 주식으로 인한 총 손실 = 가정적 시나리오 가치 -
(매매대금 + 추가지급금)

10. 중재판정은 위 산식의 세 가지 구성요소 모두에 대하여 세전 금액을 일관되게 사용하고자 하는 중재판정부의 명시적인 의도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중재판정 935항에서 중재판정부는 가정적 시나리오 가치에 대하여 세전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¹⁰ 이후, 중재판정 936항에서 중재판정부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의 세전 금액이 “고려할 금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¹¹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실제로 Mr. Boulton [청구인의 손해산정 전문가]은 청구인의 거래손실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전 금액도 고려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¹² 중재판정부는 스스로 명시한 방식과 일관되게, 가정적 시나리오 가치 (한화 535,881,584,700원)¹³와 매매대금 (한화 456,620,599,950원)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세전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¹⁴

11.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추가지급금의 총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심리 후 답변서면에서 제공한 수치인 한화 65,902,634,943원을 사용하였습니다.¹⁵ 해당 수치는 세전 금액이 아닌 *세후* 금액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중재판정의 906항에 있는 중재판정부의 설명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항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심리 후 답변서면에서 삼성물산과의 합의서에 따라 2022년 5월 12일 삼성물산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 및 기타 세금을 공제한* 한화 65,902,634,943원의 ‘추가지급금’을 수령”¹⁶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매수청구 주식에 관한 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의 세 가지 구성요소에 세전 금액을 사용하고자 한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그 중 하나의 구성요소인 추가지급금에 대하여는

¹⁰ 중재판정, ¶ 935 참고 (세금에 대한 조정 없이 삼성물산 주가 계산에 가정적 시나리오 가치를 사용).

¹¹ 중재판정, ¶ 936 (강조추가).

¹² 중재판정, ¶ 936.

¹³ 중재판정, ¶ 935 참고. **Ex. C-256**, SC&T and Cheil Share Prices, 1 January 2014 to 31 December 2015, p. 11 참고.

¹⁴ 중재판정, ¶ 936.

¹⁵ 중재판정, ¶ 936 및 각주 1573 (청구인의 2022년 5월 18일자 심리 후 답변서면, ¶ 102 인용).

¹⁶ 중재판정, ¶ 906 (강조추가) 및 각주 1526, 1573 (청구인의 2022년 5월 18일자 심리 후 답변서면, ¶ 102 인용).

원천징수세액 및 기타 세금을 공제한 (즉, 이후의) 금액을 사용한 것이 자명합니다. 중재판정부는 추가지급금의 1주당 가액이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 금액을 계산하면서 총 추가지급금 세후 금액을 주식 수로 나누어 중재판정부가 1주당 금액으로 "보인다"고 실시한 금액인 한화 8,222.50원을 산출하였습니다.¹⁷

12. 추가지급금의 세후 금액(총액과 1주당 금액 모두의 측면에서)을 사용한 이러한 오류 – 대한민국은 중재판정부가 이를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 추정합니다 – 는 매수청구 주식의 매도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가 갖추려고 의도한 "일관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류는 추가지급금 금액(총액과 1주당 금액 모두의 측면에서)이 과소 평가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산술적으로) 가정적 시나리오 가치와 실제 시나리오 매매대금의 차액(즉, 매수청구 주식에 관한 청구인의 손실 금액)을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게 하였습니다. 매수청구 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손실을 과대 평가한 오류는, 청구인에게 인정된 손해액이 과대 평가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¹⁸

13. 상술한 오류는 UNCITRAL 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정정의 대상이 되는 계산상 오류의 유형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대한민국은 다음 항에서 이 오류를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C. 정정 신청 사항

14.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은 중재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 청구인과 삼성물산 사이의 합의서에서 모든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을 결정하는 산식으로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산식¹⁹ 및 (ii) 구 삼성물산 주식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16년 5월 결정하고 대법원이 2022년 4월 확정된 주식매수 가격 형태로 청구인을 제외한 기타 주주들에게 지급된 금액 (즉, 1주당 한화 66,602원)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²⁰

¹⁷ 중재판정, ¶ 936.

¹⁸ 중재판정, ¶ 995(b) 참고.

¹⁹ Ex. C-450, 합의서 제2.4조 “추가지급금”의 정의 참고.

²⁰ Ex. C-53, 서울고등법원 2016. 5. 30. 선고 2016 라 20189(병합) 판결; Ex. C-782, 대법원 2022.

15. 합의서 제2.4조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추가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청구인에게 추가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합의서 상 “추가지급 사유”라 함은 "삼성물산 또는 기타 다른 삼성물산 그룹의 구성원 또는 다른 삼성물산 측 개인 또는 그 각각의 지정인이 (법원의 명령, 화해 합의, 기타 다른 형식의 협의 또는 합의, 양해 등의 조건에 따르거나 이러한 조건을 방법으로 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건에 의하여) 본건 합병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구 삼성물산의 다른 주주 또는 과거 주주 (...일성신약 주식회사...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게 ...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전 지급 또는 다른 가치 이전의 가액이 본건 제시가격(Suggested Price)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²¹합니다.

16. 합의서는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 계산에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을 규정합니다:

아래 **A**와 **B**를 곱한 금액을 의미한다.

(i) A = (a) 본건 합병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구 삼성물산의 주주 또는 과거 주주 ...로부터의 구 삼성물산 주식 ... 의 매수와 관련하여 ...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또는 이루어진 **1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

(ii) B = 7,732,779.²²

17. 위 산식에 따르면, 추가지급금 세전 금액의 계산에는 다음 세 가지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즉, (i) 합의서에 1주당 한화 57,234원으로 정의된 제시가격,²³ (ii) 청구인을 제외한 기타 주주들에게 지급된 1주당 가액 (제시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iii) 합의서에 7,732,779주로 명시된 청구인의 매수청구 주식 수입입니다.²⁴ 위 세 가지의 구성요소 중 합의서는 (i)과 (iii) 요소에 대하여서는 명시적인 값을, (ii) 요소의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14. 선고 2016 마 5394(병합) 판결 참고.

²¹ Ex. C-450, 합의서 제2.4조 “추가지급금”의 정의 참고.

²² Ex. C-450, 합의서 제2.4조 “추가지급금”의 정의 (강조추가).

²³ Ex. C-450, 합의서 제1.1조.

²⁴ Ex. C-450, 합의서 제2.4조 및 전문.

$$\text{추가지급금} = (\text{기타 주주들에게 지급된 1주당 가액} - \text{한화 } 57,234 \text{ 원}) \times 7,732,779 \text{ 주}$$

18. 합의서에 따르면 (ii) 요소(기타 주주들에게 지급된 1주당 가액)는 추가지급 사유의 발생 시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이 심리 후 주장서면에서 설명한 것처럼, “구 삼성물산의 기타 주주들에게 매수청구주식에 대하여 추가 금액을 지급하라”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관련 추가지급 사유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²⁵ 대법원은 2022년 4월 14일 삼성물산의 기타 주주들(일성신약 주식회사 등)이 구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재평가가격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확정판결에서 대법원은 1주당 66,602원의 가격을 확정하고 등법원 판결을 유지하였는데²⁶ 이는 합의서 상 제시가격(한화 57,234원)보다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은 위 판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주주들에게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합의서 상 추가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위에 부합하게,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 선고 후 30일 이내인 2022년 5월 12일 삼성물산으로부터 추가지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²⁷

19. 위에 따르면, 기타 주주들에게 지급된 1주당 가액(상술한 산식의 (ii) 요소)은 한화 66,602원입니다. 따라서, 제시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1주당 한화 9,368원**(즉, 한화 66,602원 - 한화 57,234원)이며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은 합의서 상 산식의 적용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한화 72,440,673,672원**입니다.

$$\begin{aligned} \text{추가지급금} &= \text{한화 } 9,368 \text{ 원} [\text{제시가격을 초과한 1주당 가액}] \times \\ & 7,732,779 \text{ 주} [\text{청구인의 매수청구 주식 수}] \\ &= \text{한화 } 72,440,673,672 \text{ 원} \end{aligned}$$

20. 대한민국은 위 세전 금액(한화 72,440,673,672원, 1주당 한화 9,368원)이 매수청구 주식과 관련한 청구인의 손실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재판정부가 사용하고자 의도하였던 추가지급금의 정확한 수치임을 정중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중재판정에서는

²⁵ 피청구국의 2022년 4월 13일자 심리 후 주장서면, ¶ 234.

²⁶ **Ex. C-78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 마 5394(병합) 판결, p. 4 참고 (“신청인들은 항고하였고, 원심법원은 2016년 5월 30일 구 삼성물산 (주) 주식의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신청인들과 사건본인은 재항고하였다.”); p. 11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

²⁷ 청구인의 2022년 5월 18일자 심리 후 답변서면, ¶ 102 참고.

위 금액이 아니라 세후 금액(한화 65,902,634,943원)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1주당 금액을 스스로 계산하면서 8,522.50으로 잘못 계산 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액 가운데 하나를 사용한 모든 계산에 일련의 정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정정 사항들을 아래 신청취지에 각 포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세전) 추가지급금인 한화 72,440,673,672원이 적용될 경우,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협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인의 투자가치 손실”은 (i) “68,744,114,123원”에서 “**62,206,067,478원**”으로 정정되어야 하고, 그 미화 환산액에 있어서도 (ii) “53,586,931.00달러”는 “**48,490,251.66달러**”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화 약 500만달러(혹은 그에 대한 이자를 고려할 경우 그 이상) 상당의 차이에 해당합니다.

21. 대한민국은 청구인이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총액과 1주당 금액 모두의 측면에서)을 관련된 모든 시점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심리 후 답변서면과 함께 위 세전 금액을 중재판정부에 제공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한민국은 청구인이 본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상이한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을 확인해주는 추가적인 사실 증거를 제출할 경우 대한민국의 정정 신청 사항을 수정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매수금액에 대하여 합의서에 기재된 세율(총 11.5%)을 적용할 경우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은 총 한화 74,466,254,173원²⁸이 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본 신청서에서 신청한 정정액보다 대한민국에게 더 유리한 금액임도 지적합니다.

III. 해석 신청

A. 적용되는 법리

22. UNCITRAL 규칙 제37조 제1항:

중재판정문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통지와 함께 중재판정의 해석을

²⁸ Ex. C-450, 합의서 제2.2(a)조 참고 (“법인세법 제98조”는 10%의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 52”는 1%의 세율 및 “증권거래세법 제9조”는 0.5% 세율). 추가지급금에 대하여 동일한 총 세율인 11.5%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은 세후 금액인 한화 65,902,634,943원에 100/(100-11.5)을 곱한 금액인 한화 74,466,254,173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²⁹

23. 중재판정 해석의 목적은 “중재판정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그 어떠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에 따라 중재판정을 이행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하는”³⁰ 데 있습니다. 본 해석 신청에서는 판정 전 이자를 계산할 때 사용되어야 할 통화에 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 해석은 중재판정이 이행되어야 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24. 중재판정 정정 신청과 동일하게 중재판정 해석 신청 기한은 30일입니다.³¹ 중재판정은 본 해석 신청일로부터 28일 전인 2023년 6월 20일 내려졌으므로, 본 신청은 신청 기한을 준수하였습니다.

B. 해석이 요구되는 모호함의 특징

25. 중재판정에는 판정 전 이자에 적용될 통화와 관련한 모호함이 존재합니다.

26.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 961 항에서 “따라서 판정 전 이자에 적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 주문 부분에서 “청구인에게 위(b)항의 금액에 대하여 5%의 비율로 판정 전 이자를”³²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중재판정 995(b)항의 금액은 미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미화 53,586,931.00달러).³³

27. 중재판정의 이러한 두 가지 다른 부분에서 중재판정부가 한 판시는 판정 전 이자가 계산될 통화와 관련하여 판정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데, 두 해석이 모두 옳을 수는 없습니다. 즉, (A) 대한민국이 지급해야 할 판정 전 이자는 미화 53,586,931달러에 대하여 연 복리 5%의 비율로 2015년 7월 16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 발생한 금액 (또한, 이 금액은 미 달러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외화 환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이라는 해석 또는 (B) 대한민국이 지급해야 할 판정 전 이자는

²⁹ UNCITRAL 규칙, 제37조 제1항.

³⁰ **RLA-176**, Nigel Blackaby *et al.*,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7th. ed. 2023), ¶ 10.15.

³¹ See UNCITRAL 규칙, 제37조 제1항 참고.

³² 중재판정, ¶ 995(c).

³³ 중재판정, ¶ 995(b).

한화 68,744,114,123원³⁴에 대하여 연 복리 5%의 비율로 2015년 7월 16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 발생한 금액으로 미화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해석(본 해석에 따르면 한화를 미화로 환전할 기준일이 판정일 혹은 지급일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모호함이 발생함)이 가능합니다.

C. 해석 신청 사항

28. 상술한 모호함은 대한민국의 중재판정 이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 995(b)항과 995(c)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판정 전 이자를 미화로 계산하라고 명하는 것을 의도한 것인지, 혹은 96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정 전 이자를 한화로 계산할 것을 명하는 것을 의도한 것인지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만약 후자라면 미화로의 환전 기준일도 추가로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IV. 결론 및 신청 취지

29. 전술한 이유로 대한민국은 중재판정 정정 및 해석 신청을 인용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30. **정정.** 정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중재판정부에 매수청구 주식의 매도를 통하여 청구인이 얻은 실제 시나리오 매매대금을 위 II.C항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추가지급금의 세전 금액을 이용하여 재계산할 것 및 그에 상응하여 추가지급금 또는 실제 시나리오 매매대금 금액을 잘못 판시하거나 그와 같이 잘못된 금액으로부터 도출된 다른 잘못된 금액을 판시한 모든 판정 부분의 정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1. 참조의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은 아래 표에 정정이 요구되는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항 및 각주를 정리하였습니다:

| 원문 | 정정 | 중재판정 해당 부분 |
|------------------------------------|-------------------|------------|
| “65,902,634,943원” (“추가지급금의 총액”) | “72,440,673,672원” | 936항 |

³⁴ 중재판정, ¶ 948 참고.

| 원문 | 정정 | 중재판정 해당 부분 |
|---|--|------------|
| “8,522.50원” (“[매수청구 주식에 대한] 1주당 추가지급 금액”) | “9,368원” ³⁵ | 936항 |
| “67,572.50원” (“[매수청구 주식]에 대한 1주당 총 매매대금”) | “68,418원” ³⁶ | 936항 |
| “522,523,208,978원 내지 약 5,225억원” (“전체 [매수청구 주식] 7,732,779주에 대하여”) | “529,061,273,622원 내지 약 5,291억원” ³⁷ | 936항 |
| “1,727.50원” (“[매수청구 주식에 대한] 1주당 손실”) | “882원” ³⁸ | 936항 |
| “13,358,357,723원 또는 약 134억원 (“청구인의 | “6,820,311,078 또는 약 68억원” ³⁹ | 936, 938항 |

³⁵ 한화 66,602원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라 기타 주주들에게 지급된 1주당 가액 (Ex. C-782, p. 4, 11)] – 한화 57,234원 [합의서 상 제시가격 (Ex. C-450, p. 2)] = 한화 9,368원.

³⁶ 한화 59,050 원 [합의서 제2.2조에 따른 총 1주당 가격 (중재판정 ¶ 936; CER-3, para. 6.2.8)] + 한화 9,368원 [1주당 추가지급금액 (Ex. C-782, p. 4, 11; Ex. C-450, p. 2, 6)] = 한화 68,418원.

³⁷ 한화 68,418원 [매수청구 주식 1주당 총 매도 가격 (중재판정 ¶ 936; CER-3, para. 6.2.8; Ex. C-782, p. 4, 11; Ex. C-450, p. 2, 6)] x 한화 7,732,779 [매수청구주식 수 (Ex. C-450, p. 6)] = 한화 529,061,273,622원.

³⁸ 한화 69,30원0 [가치평가일 당시 청구인이 보유 중인 매수청구 주식의 가치 (중재판정 ¶ 935; Ex. C-256, p.11)] – 한화 68,418원 [매수청구 주식 1주당 총 매도 가격 (중재판정 ¶ 936; CER-3, para. 6.2.8; Ex. C-782, p. 4, 11; Ex. C-450, p. 2, 6)] = 한화 882원.

³⁹ 한화 882원 [매수청구 주식 1주당 손실 (중재판정 ¶ 935; Ex. C-256, p.11; 중재판정 ¶ 936;

| 원문 | 정정 | 중재판정 해당 부분 |
|---|--|--------------|
| 매수청구 주식에 대한 총 손실”) | | |
| “68,744,114,123원 내지 약 687억원” (“청구인의 ... 보유하던 주식 11,125,927 주에 대한 총 손실” / “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협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 가치의 손실”) | “62,206,067,478원 내지 약 622억원” ⁴⁰ | 938,948항 |
| “53,586,931.00달러” (“중재판정 금액”) | “48,490,251.66달러” ⁴¹ | 952,995 (b)항 |

CER-3, para. 6.2.8; Ex. C-782, p. 4, 11; Ex. C-450, p. 2, 6)] x 한화 7,732,779원 [매수청구 주식 수 (Ex. C-450, p. 6)] = 한화 6,820,311,078원.

⁴⁰ 한화 6,820,311,078원 [매수청구 주식으로 인해 발생한 총 손실 (중재판정 ¶ 935; Ex. C-256, p. 11; 중재판정 ¶ 936; CER-3, para. 6.2.8; Ex. C-782, p. 4, 11; Ex. C-450, p. 2, 6)] + 한화 55,385,756,400원 [비 매수청구 주식으로 인해 발생한 총 손실 (중재판정 ¶ 938)] = 한화 62,206,067,478원.

⁴¹ 한화 62,206,067,478원 / 1000 * 0.77951 [전체 보유 주식을 통하여 발생한 총 손실을 중재판정일에 한화에서 미화로 환전한 금액 (중재판정 ¶ 952, 각주 1585)] = 미화 48,490,251.66달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

32. **해석.** 해석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 995(b)항과 995(c)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정 전 이자를 미화로 계산하라고 명하는 것을 의도한 것인지, 혹은 96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정 전 이자를 한화로 계산할 것을 명하는 것을 의도한 것인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만약 후자라면, 미화로의 환전 기준일도 추가로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 *

정중히 제출합니다.

Anton A. Ware
Jun Hee Kim
Jane Wessel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
피청구국 대리인

Kevin Kim
John P. Bang
Seokchun Yun
Ara Cho
Peter & Kim LLP
피청구국 대리인